○○초등학교 공사대금(폐기물처리비) 청구 소송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 [파기환송]	사건유형	공사대금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화해권고 결정일	2024. 7. 1.	비 고	쌍방 화해권고 수용
사건개요	❍ 원고는 가칭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 폐기물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임 ❍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가칭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계약수량이 초과되어 폐기반출물 처리를 거부하였으나 공사감독관이 초과처리한 비용을 각 시공사에서 대금결제할 것이라며 폐기물반출을 요구하여 해당 폐기물을 처리함. 이후 각 시공사에 대금결제를 요청하였으나 지급 의사가 없다 하여 각 시공사 및 발주처에 초과 처리한 각 폐기물 처리비용을 청구함.		
결정 (요약)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2024.7.31.까지 2,200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은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판결요약	❍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는데, 계약체결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포기도 마찬가지임. 원고는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계약물량 초과사실을 알렸으나 피고는 시공사와 협의하라고만 지시하고 공사비용에 계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음으로써 건설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임.		